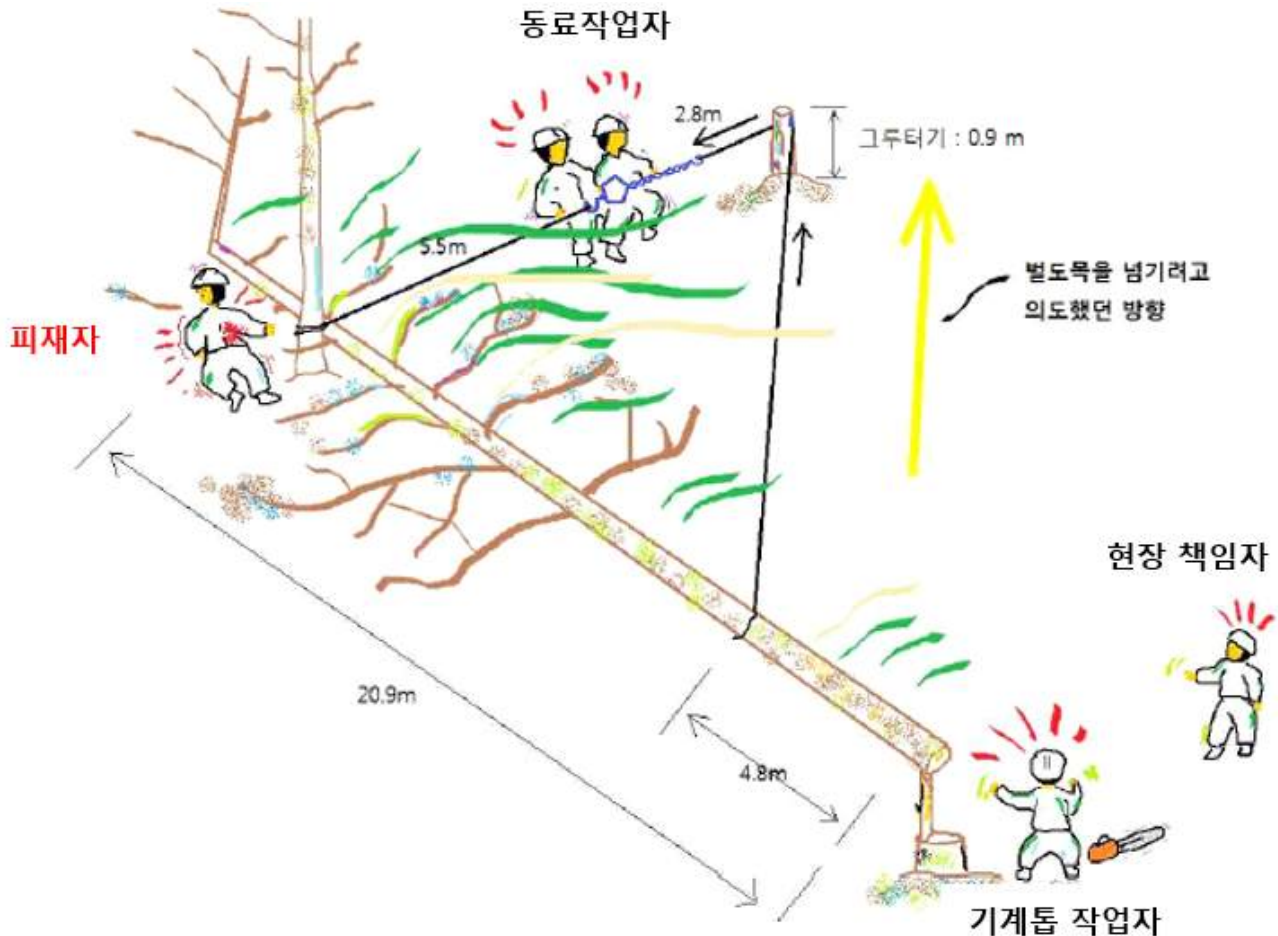




## 재해 개요

- '19.05.03.(금) 11:20분경 0000소속 근로자 5명이 위험목 제거작업 중 벌도목이 도로변으로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체인블록과 로프를 체결하여 잡아당기며 경사지 안쪽으로 넘기는 방법으로 벌목작업 중 대방향에서 대기하던 재해자 측으로 벌도목이 넘어가면서 재해자가 가슴부위를 맞고 사망한 재해임



## 재해 발생 원인

- 위험구역 내에서 작업 중 재해발생
  - 벌목작업을 시작하기 전 벌목작업자 외 근로자들이 대피를 마치고 안전을 확보한 후에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나 벌도목이 넘어질 경우 맞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작업을 진행함



## 재해예방 대책

- 벌목작업 정 위험구역의 근로자 대피조치 실시
  - 벌목작업을 시작하기 전 벌목작업자 외의 근로자들은 위험지역 밖으로 대피하여 안전을 확보한 후에 벌목작업을 실시하여야 함

본 사례는 공공기관 발주공사, 직영, 하청 등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에서 동종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배포하고 있습니다.